

# 추 가 공 고

근골격계질환 다발 업종, 제도권 신규 유입 업종 등 취약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「근골격계 질환 예방 유해요인조사 및 컨설팅 지원」 사업에 대하여 서울광역본부 권역을 수행할 기관을 추가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5일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1. 접수기간: 2024. 4. 5.(금) ~ 4. 15.(월) 18:00까지
2. 제출서류
  - 참여 신청서 및 첨부 서류 1부
  - 제안서 10부
3. 접수처: 공단 서울광역본부
4. 문의처: 서울광역본부 산업보건센터 김민정 과장(02-6711-2834)
5. 세부내용: 공모문 참조

<붙임>

1. 『근골격계질환 예방 유해요인조사 및 컨설팅 지원』 공모문 1부.
2. 제안서 작성방법 및 수행기관 선정기준 1부.

# 『근골격계질환 예방 유해요인조사 및 컨설팅 지원』 추가 공모

## 1. 사업 목적

- 근골격계질환 다발 업종, 제도권 신규 유입 업종 등 취약 사업장에 유해요인조사, 보호 Kit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유해요인을 발굴·개선하고, 통증호소자 관리로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

## 2. 공모 개요

- 사업명: 근골격계질환 예방 유해요인조사 및 컨설팅 지원
- 계약기간: 계약체결일 ~ '24. 11. 29.(금)  
※ 사업수행기간: 계약체결일 ~ '24. 11. 15.(금)
- 사업내용: 공단에서 의뢰한 사업장에 방문하여 ①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, ②보호 Kit 제공, ③작업환경 개선지도, ④비정형작업 (들기작업 중심) 실태조사, ⑤통증호소자 파악 실시
- 추가 공모 물량: 서울광역시본부 권역 170개소(1.02억원, VAT 포함)  
※ 수수료: 600,000원/개소 × 계약물량
- (지역) 서울광역시본부 권역 일선기관별 관할 지역

권역	일선기관	수행 지역
서울 광역시 본부	서울광역시본부	서울특별시 중구·종로구·동대문구·서초구·강남구·용산구·마포구·서대문구 및 은평구
	강원지역본부	강원도 춘천시·원주시·홍천군·인제군·화천군·양구군 및 횡성군, 경기도 가평군
	서울남부지사	서울특별시 영등포구·양천구·강서구·관악구·구로구·금천구 및 동작구
	서울동부지사	서울특별시 성동구·광진구·송파구·강동구·중랑구·노원구·강북구·도봉구 및 성북구
	강원동부지사	강원도 강릉시·속초시·동해시·태백시·삼척시·양양군·고성군·영월군·정선군 및 평창군

### ○ (물량) 권역 일선기관별 수행가능 물량 신청

- ※ 제안서 평가위원회 결과, 선정된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수행 물량은 조정될 수 있음

- 사업대상: 50인 미만의 ①특고택배기사(물류서브 포함), ②환경미화원(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), ③마트종사자(편의점 제외), ④특고가전제품 설치·수리원, ⑤특고소프트웨어기술자, ⑥최근 3년간 근골격계질환 발생, ⑦근골격계질환 다발 업종(공통 70%, 지역별 30%) 사업장 등

※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고, 최근 3년 이내 정기 유해요인조사를 미 실시한 사업장에 한함

※ 사업 수행 전, 수행 기관이 사업장별 유해요인조사 실시 여부를 확인 후 업무 수행

※ 본 용역사업을 통하여 지원한 사업장('21년~)은 제외

### □ 추진절차



## 3. 접수 및 참여 조건

### □ 신청서 접수

- (접수기간) '24. 4. 5.(금) ~ 4. 15.(월) 18:00(18시 이후 접수 불가)
- (신청방법) 직접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(마감일 도착분에 한함)
- (접 수 처) 공단 서울광역본부

※ 주소: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2 (봉래동, 우리빌딩), 7~9층

### ○ (제출서류)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· 참여 신청서 1부               | · 고용노동부 지정서 사본 1부(해당시)    |
| · 사업계획서(제안서) 10부          | ·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1부(해당시)  |
| · 사업계획서(제안서) 발표자료(PPT) 1부 | ·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협약서 1부 |
| ·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 사본 1부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사업계획서(제안서) 작성내용은 제안요청서(덧붙임2)를 참조하되, 원본 1부는 기관명 표기, 나머지 사본 9부는 기관명 미 표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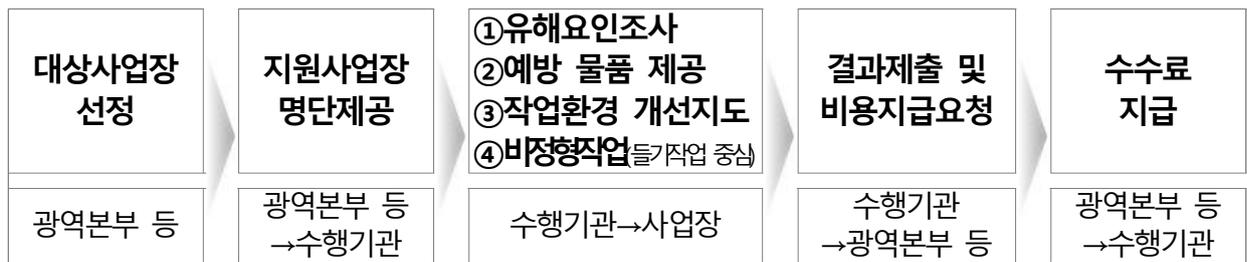
□ 참여 조건

- (수행기관) 고용노동부 지정을 받은 보건관리전문기관, 작업환경 측정기관, 보건진단기관,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, 산업보건 지도사가 설립한 법인
- (수행자격) 인간공학기사 이상,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이상, 산업 보건지도사, 보건관리자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\*

\* 공단 교육원에 개설된 유해요인조사 전문가 교육과정 이수 또는 본부 주관으로 개최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함

#### 4. 주요 과업내용

□ 수행 절차



□ 대상선정 및 수행한계

- (대상선정)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단 일선기관별 수행 지역을 참고하여 가급적 균등하게 취약 사업장 선정

- (수행한계) 수행요원 1인당 월 20건 이내

※ 유해요인조사(본조사)는 1일 1개소로 제한되며, 고용노동부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날에 유해요인조사(본조사) 병행 수행 불가(실적 불인정)

□ 주요 수행내용

(1) 유해요인조사

- (수행방법) 고용노동부 고시\*, KOSHA Guide\*\*, 근골격계질환 예방 업무편람, 과업내용서에 따라 실시

\*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(제2020-12호)

\*\*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(H-9-2022)

○ **(수행내용)** ①작업장 상황 조사(설비,작업량,작업속도,업무변화), ②작업 조건 조사(작업내용·부하·빈도 등) 조사, ③증상조사(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 및 증상 유무)

○ **(정밀조사)** 최근 3년간 근골격계질환자 발생공정 등 인간공학적 평가도구\*를 활용한 정밀조사 추가 실시(전체 수행물량 20% 이상)

\* REBA(전신부하 평가), RULA(상지부하 평가), NLE(중량물 들기 평가) 등

○ **(보고서 작성)** 본조사 후 조사과정 중 수집된 자료, 증상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유해요인조사 결과서 등 사업장에 제공할 보고서 작성

▶ 작성문서: ①근골격계부담작업 평가표(체크리스트), ②유해요인 기본조사표, ③정밀조사표(필요시), ④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, ⑤증상조사표 분석결과, ⑥작업환경 개선계획서, ⑦작업환경 개선지도 보고서

※ 고용노동부 고시 및 가이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서식 수정 활용 가능

○ **(결과 설명)** 본조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유해요인 조사결과, 증상조사 분석결과, 작업환경 개선대책 등 설명한 후 보고서 제공

## (2) 근골격계질환 예방 보호 Kit 제공

○ **(배포)** 근골격계부담작업 종사자, 통증호소자에게 근골격계질환 예방 보호 Kit\* 제공

\* 손목, 발목 등 보호대(4종) 및 근골 예방 테이프(1종)으로 구성(세트)되며, 공단에서 구매하여 수행기관에 제공

○ **(보관)** 예방 물품은 사업장 당 평균 5세트 제공 예정이며, 수행 기관은 물품 보관을 위한 충분한 보관장소 확보 필수

\* 보호 Kit는 계약 후 100일에 걸쳐 총 3회 분할 배송 예정

- (관리) 제공 물품의 훼손을 막고 품질·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며, 부정하게 목적외 사용하거나 분실, 망실, 훼손 등 수행 기관 과실로 손망실이 발생할 경우 변상 조치

### (3) 작업환경 개선지도

- (컨설팅) 법적사항 준수여부 확인, 유해요인 점검, 인간공학적 작업 환경 개선지도, 유해성 주지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컨설팅 실시
  - ※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기술자료 배포(수행기관 자체 제작)
- (개선지도)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부담작업 종사 근로자가 많거나, 작업조건 조사 결과 총점수(A×B)가 높거나, 통증호소자가 많은 공정(직종) 등 우선순위에 따라 작업환경개선 지도
  - ※ '㉞작업환경 개선지도 보고서'를 활용하여 개선대책 등 제시

### (4) 비정형작업(들기작업 중심)

- (수행내용) 근골격계질환이 근골격계부담작업 이외의 작업에서도 많이 발생하므로 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정형작업(들기작업 중심)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조치 지도 실시

▶ 작성문서: ㉞비정형작업(들기작업 중심) 실태조사표

### (5) 사후관리 연계

- (사후관리) 근골격계질환 통증호소자\* 등 유증상자를 파악하여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한 사후관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공단으로 명단 제출
  - \* 통증호소자 판단 기준은 'NIOSH Symptom Survey' 기준을 적용하여 각 신체부위별 통증기간, 통증빈도, 통증강도를 조합하여 판정
  - ※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게시 자료 활용(근골격계질환예방▶기술자료)

### □ 기타 사항

- (실적 제출) 월간 수행실적(당월 1일부터 말일), 유해요인조사 보고서 등 서류일체, 통증호소자 현황, 보호 Kit 배포실적(인수증 포함) 등을 공단 광역본부 등에 익월 5일까지 제출
- (종합보고서) 사업종료 후 사업수행 결과를 분석하고 주요 업종별 유해요인 현황 및 개선대책 내용, 비정형작업(들기작업 중심) 실태 조사 결과 등이 담긴 종합보고서(hwp, pdf)를 작성하여 '24. 11. 29.(금)까지 공단 광역본부 등으로 제출

## 5. 심사 방법 및 결과 통보

- 심사일정: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(별도 일정 통지)
- 기관선정: 지역별 수행물량 범위 내에서 수행기관 1개소 이상 선정
- 제안서 발표: 발표순서는 상호명(주식회사 등 일반적인 명칭은 제외)의 가나다 순으로 하고 발표시간은 약 15분, 질의응답 약 10분 실시
- 선정방법: 제안서 심사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 실시
  - ※ 평균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심사기준표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
- 결과발표: 해당기관 개별 통보
  - ※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 기재시 선정 취소하며 제출한 참여신청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

## 6. 비용청구

- (용역비) 수수료는 선금, 정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
- (선금) 선금은 계약체결 후 요청 시 「선금지급지침」에 따라 계약 금액의 70% 이내에서 지급 가능
- (수수료) 지원 건수를 기준(600,000원/건)으로 수행실적 정산

## 제안서 작성방법 및 수행기관 선정기준

### 1. 제안서 작성

#### ○ 제안서 작성요령

- 한글(HWP), 파워포인트(PPT), MS Word, PDF 등 형식 제한 없음
- 가급적 공단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(제안서) 내용의 목차 및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심사기준과 관련 없는 자료는 작성 지양
  - ※ 수행기관 선정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(기관명 등) 기재 금지
- 사업계획서(제안서)는 계약 서류의 일부가 되며, 계약 이후 동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, 제안한 내용을 적정하게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제 가능
- 수행기관 선정 심사시 발표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및 파일 USB 제출(발표시간은 기관당 약 15분 내외)

#### ○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

- 제출자료(제안서 및 발표자료) 원본에는 참가 업체명을 표기하고, 심사용 사본에는 업체명 표기를 금지한다.
  - ※ 심사용 제출자료(사본)에 참가 업체명이 표기된 경우 접수하지 않음
- 제안기관은 본 제안 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내용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한다.
- 제안서 등의 제출서류는 제출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,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한다.
- 제안서 등은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기관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.

-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, 추가, 대체할 수 없으며 기재내용은 실제와 일치하여야 한다. 단, 제안서의 기재내용 변경 또는 추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호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.
- 본 제안과 관련하여 획득한 공단에 대한 정보 및 공단이 제공한 정보를 대외에 누설하거나 본 용역 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 등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해당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.
- 낙찰자 선정 이후에라도 기 제출한 제안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낙찰자 선정을 취소한다. 이 경우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.
- 제안기관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서 및 용역 결과물에 대해 발생하는 지적 재산권 등의 문제 발생시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.
-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제안서는 계약 이행조건으로 하며, 공단은 필요시 제안서 제출기관에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-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(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)
- 제안서 관련 해석상의 문제 발생 시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.
- 제안서는 계약서류의 일부가 되며,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## 2. 수행기관 선정

### ○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

- (운영) 공단의 「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지침」에 따라 평가위원회 구성·운영 및 평가실시
- (시기)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(별도 통지)

- (구성) 위원장을 포함하여 6~8인 이상으로 구성(외부위원 과반)
- (발표) 발표순서는 업체 상호명(주식회사 등 일반적인 명칭은 제외)의 가나다 순으로 하고 발표시간은 약 15분, 질의응답 약 5분 실시
- (평가방법)
  - . 신청기관 사업계획서 발표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 실시
  - . 심사는 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기준에 의해 항목별로 실시
  - ※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

**【 선정 심사기준 】**

- ① 사업수행 조직(5점)
- ② 사업수행 인력(20점)
- ③ 사업수행 인력의 전문성(15점)
- ④ 사업수행 방법(30점)
- ⑤ 보호 물품 수령·관리 계획(10점)
- ⑥ 기술자료 개발 및 제공계획(10점)
- ⑦ 사업수행 품질관리(5점)
- ⑧ 수행인력의 전문성, 업무능력 배양계획(5점)
- ⑨ 전담인력 운영계획(가점 5점)
- ⑩ 용역사업 선정·수행 이력(가점 5점)

※ 심사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선정  
 (④사업수행 방법→②사업수행 인력→③사업수행 인력의 전문성→⑤보호 물품 수령·관리계획→⑥  
 기술자료 개발 및 제공계획→⑦사업수행 품질관리→⑧수행인력의 전문성, 업무능력 배양계획→  
 ①사업수행 조직→⑨전담인력 운영계획→⑩공단 용역사업 선정·수행 이력)

- (수행기관 선정)
  - . 심사결과 합산점수가 산술평균 85점(만점의 85%) 이상인 제안 기관을 협상 적격자로 선정(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)
  - ※ 합산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인정
  - ※ 심사위원별 심사점수가 60점미만이 1명이라도 발생한 경우 협상적격자 선정에서 제외
  - . 협상적격자 중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
  - . 우선협상대상자와 수행물량 및 사업수행계획(제안서)을 협상하여 수행기관을 최종 선정(2개 이상 선정 가능)

**【덧붙임2】 용역 제안서 주요목차 및 작성내용(예시)**

작성항목	작성내용
<b>I. 신청기관 현황</b>	
1. 신청기관 현황	○ 신청기관 개요 및 현황 ○ 신청기관 자격에 따른 안전보건조직 및 인력현황
2. 신청기관 업무현황	○ 지정사항(보건대행, 작업환경측정, 보건진단 등 지정 한계 등) ○ 최근 3년간(21~23년) 지정업무 및 공단 위탁(용역) 참여 실적
<b>II. 제안 개요</b>	
1. 신청 배경 및 목적	○ 사업 참여 배경 및 목적
2. 사업수행 방향 및 전략	○ 제안요청서의 주요 요구내용
3. 제안의 특징 및 장점	○ 제안의 특징, 타 기관과의 차별성 및 경쟁 우위 요소 ○ 사업 추진내용의 파급효과
<b>III. 사업수행 세부추진계획</b>	
1. 사업추진 조직	○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- 사업운영 조직현황(책임자, 실적관리, 행정 등 역할분담 포함)
2. 사업수행 인력	○ 사업수행 인력운영 계획 및 인력의 전문성(경력) - 투입인력 총괄현황(지정업무자·전담인력 인원, 채용계획, 업무경력 등 포함) ※ 용역 투입인력 총괄현황 제출(별지3) - 지정업무자*·전담인력 수행계획(월간 수행여력, 수행계획물량 등) * 지정업무자는 월간 지정업무 사업장수, 지정업무일 등을 포함하여 작성 ※ 수행자별 월간 수행여력, 수행물량을 수치화하여 제시할 것
3. 사업수행 방법	○ 유해요인조사 수행계획 - 예비조사(부담작업과약), 본조사(기본조사,증상조사,정밀조사 등), 보고서작성, 결과 설명 등 세부기술 ○ 근골격계질환 예방 보호 Kit 수령·관리계획(보관장소 확보, 훼손·분실방지, 수불관리 등 관리방안 전반) 및 적정 배포계획 ○ 작업환경 개선지도(컨설팅) 수행계획(개선사례, 주요 유해요인별 개선 대책) ○ 비정형작업(들기작업 중심) 수행 방법 및 배포용 기술자료 준비계획 ○ 종합보고서 작성 계획(업종별 부담작업 및 유해요인, 개선대책 포함) ○ 수행요원의 전문성, 업무수행능력 향상계획(사업개시전, 신규인력 채용시 교육, 수행인력 정기교육 계획 등) ○ 과업 외 기관 자체적으로 추가 수행계획(해당 시) ○ 제안 요청사항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 제시 등
<b>IV. 사업수행 관리</b>	
1. 사업수행 품질 관리	○ 사업수행 중 자체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 계획 -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법 등 목적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수행 품질 향상 방안 제시



[별지2]

##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협약서

1. 당 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‘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지원’ 사업을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 안전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.

- 아 래 -

-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.
- ② 퇴직급여 지급,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.
-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습니다.
- ④ 「근로기준법」(근로시간 준수,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), 「최저임금법」, 「산업안전보건법」(안전·보건교육,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)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(부당노동행위 금지 등), 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 등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.
- ⑤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.

2.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체·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협약서를 제출합니다.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법인(단체명) :

소재지 :

대표자 :

(서명 또는 인)



[별지4]

## 사업계획서(제안서) 평가항목 및 배점표

2024년    월    일

용역명	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컨설팅 지원
제안기관 번호	

항 목	배 점	평 점 기 준					점 수
		우 수	양 호	보 통	미 흡	불 량	
<b>1. 사업수행 조직</b> -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과 관리능력(실적·행정·인력관리 등)을 갖추고 있는가?	5	5	4	3	2	1	
<b>2. 사업수행 인력</b> - 수행인력(지정업무수행자, 채용예정자 등)이 사업물량 달성을 위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? ※ 지정인력(추정·대행) 및 전담인력(신규채용)의 월간 수행 여력(수행가능물량)을 계산하여 투입인원이 적정한지 판단	20	20~17	16~13	12~9	8~5	4~1	
<b>3. 사업수행 인력의 전문성</b> - 수행인력(지정·전담)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력(경험)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가?	15	15~13	12~10	9~7	6~4	3~1	
<b>4. 사업수행 방법</b> - 유해요인조사(부담작업 파악, 조사방법, 정밀조사 등), 작업환경개선 지도, 비정형작업(들기작업) 수행, 통증호소자 파악, 보고서 작성, 기술자료 제공 등 사업수행 계획이 우수한가?	30	30~25	24~19	18~13	12~7	6~1	
<b>5. 보호 물품 수령·관리계획</b> - 보호 KIT의 훼손·도난·분실방지를 위한 보관 및 수불관리 대책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가?	10	10~9	8~7	6~5	4~3	2~1	
<b>6. 기술자료(보고서 양식 포함) 개발 및 제공계획</b> - 수행기관 자체적으로 사업장에 제공할 기술자료 등 개발 및 배포계획이 잘 마련되었는가?	10	10~9	8~7	6~5	4~3	2~1	
<b>7. 사업수행 품질관리</b> - 사업수행 중 자체 모니터링 실시계획이 적정한가?	5	5	4	3	2	1	
<b>8. 수행인력의 전문성, 업무능력 배양계획</b> - 자체교육 등 업무능력 배양계획이 적정한가?	5	5	4	3	2	1	
<b>9. (가점) 전담인력 운영계획의 적정성</b> ※ 전체물량 대비 전담자 수행물량(계획) 비율에 따라 부여	+5	5점(100%) 3점(75%이상 100%미만) 1점(50%이상 50%미만) 0점(50% 미만)					
<b>10. (가점) 최근 1년간 공단 산업보건분야 용역사업 선정·수행이력 여부</b>	+5	5점(해당 시)					
<b>총 점</b> (합산점수가 100점을 넘는 경우 100점 부여)		<b>100점</b>					
심사의견							
심사위원	소 속					성 명	(서 명)
	직 책						